

부속서 I

관세 양허표

일반 주해

1. 이 부속서는 2012년 1월 1일에 발효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 2012년판에 기초하여 작성된다.
2. 이 부속서의 목적상, 각 당사자의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 세율은 2014년 1월 1일에 발효 중인 각 당사자의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반영한다.
3. 이 부속서의 목적상, **이 협정의 발효일**은 제20.6조(발효)제2항에 따른 이 협정의 발효일을 말한다.
4. 이 부속서의 관세 인하 이행의 목적상, 연도¹는 다음을 말한다.
 - 가. 호주, 브루나이다루살람, 캄보디아, 중국, 한국, 라오인민민주공화국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뉴질랜드, 싱가포르, 태국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, 첫 번째 연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이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고,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그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, 그리고
 - 나. 인도네시아, 일본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, 첫 번째 연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이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이고,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그 연도의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
5. 제20.6조(발효)제3항에 따라 이 협정이 더 늦은 날 발효되는 서명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단계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포함하여, 이 부속서의 모든 양허표에 규정된 단계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.

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관세 인하는 해당 연도의 첫째 날에 시행된다.